

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20-11호

신당제11구역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정정 고시

1.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5-73(2015.8.31.)호로 고시된 신당 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고시와 관련하여 오기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
2020년 1월 31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가. 정정사유 : 관리처분계획인가 중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에서 소재지(지번) 오기 정정

나. 정정내용 : 단순 오기정정

- (정정 전) 신당동 185-779번지 → (정정 후) 신당동 85-779번지

□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(변경)

< 정정 전 >

연번	동명	소재지	지목	1필지공부상	구역편입	무상양도	소유자	비고
계				-	202.00	195.00		소로(3-A)
⋮	(생략)							
10	신당동	185-779	대	10.00	10.00	10.00	서울중구	

< 정정 후 >

연번	동명	소재지	지목	1필지공부상	구역편입	무상양도	소유자	비고
계				-	202.00	195.00		소로(3-A)
⋮	(생략)							
10	신당동	85-779	대	10.00	10.00	10.00	서울중구	